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20.

다. 상정일자 :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3. 11. 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주민생활복지과장

가. 제안이유

○ 마포복지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화 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재단의 사업범위 확대(제3조)

-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 신설

-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관리 추가

다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○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마포복지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화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- 안 제3조 제1호 중 “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” 을 복지 자원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” 을 신설하며
- 같은 조 제6호 중 “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” 를 “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” 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
○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타당성

지역사회 복지 수요의 증가 및 「사회보장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사업 증가로 인하여 효과적인 운영·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의 개정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참 고 자 료

1. 마포복지재단 운영현황

○ 사업(설립)근거

- 민법 제32조 /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추진경위

- '20. 2. 21.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
- '21. 9. 8. 마포복지재단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개최
- '21. 9. 마포복지재단 설립허가 신청(서울시 복지정책과)

○ 설립형태 : 마포구출연기관, 비영리 재단법인, 공익법인

○ 설립허가 : 2021. 11. 2.(대표자: 이흥주)

○ 운영재원 : 구 출연금, 이자수입, 후원금, 기타

○ 기본재산 출연목표: 50억원

- 현 기본재산 : 총35억원(21년도 20억원, 22년도 5억원, 23년도 10억원)

○ 조직·인력 : 이사회(이사17명), 감사(2명), 사무국(2개팀 7명)

○ 주요사업

-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
- 나눔네트워크 지역위원회 구축 및 운영
-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
- 효도밥상 후원금(품) 모집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
- 위수탁운영(푸드마켓,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등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